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23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부칙안 제2조)
- 나.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 띄어쓰기 준수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28. ~ 10. 18.)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르신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¹⁾하고

- 그 밖에 관계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간의 어르신복지기금의 운용실적과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춰 기금 존속기한 연장, 그 밖에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2022. 10. 12. ~ 10. 2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금존속기간 5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참고

어르신복지기금

□ 기금개요

- 설치목적: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활동 사업 지원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1997년(최초 기금조성: 1998년)
- 기금재원: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금이자 적립
- 기금용도
 -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사업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 어르신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 그 밖의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기금 조성액: 1,045,586천원 (2022. 12. 31. 기준 추정액)

(단위: 천원)

조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고
계	출연금	증식이자+반납액			
1,652,101	1,000,000	652,101	606,515	1,045,586	

□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022. 12. 31. 기준 추정액)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A)	출연금	증식이자	기타 (반납금)	사업지원비 (B)	당해년도 (A-B)	누계
2016년까지	1,522,868	1,000,000	521,377	1,491	391,325	1,131,543	1,131,543
2017년	21,010		21,010		18,000	3,010	1,134,552
2018년	21,014		21,014		40,000	△18,986	1,115,566
2019년	33,153		33,153		35,000	△1,847	1,113,719
2020년	24,611		24,611		-	24,611	1,138,330
2021년	12,445		12,445		57,190	△44,745	1,093,586
2022년(추정)	17,000		17,000		65,000	△48,000	1,045,586
합계	1,652,101	1,000,000	650,610	1,491	606,515		

□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계	1,067,586	1,110,586	△43,000	합계	1,067,586	1,110,586	△43,000
예치금 회수	1,045,586	1,093,586	△48,000	비용자성 사업비	65,000	65,000	-
이자수입	22,000	17,000	5,000	예치금	1,002,586	1,045,586	△43,000

□ 예치금 상세

(단위: 천원)

예치처	2021년말	2022년말 추정(A)	2023년말 추정(B)	증감(B-A)
합계	1,093,586	1,045,586	1,002,586	△43,000
구 금고(우리은행)	1,093,586	1,045,586	1,002,586	△43,000

○ 기금운용: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함

○ 금리현황 (※ 2022. 9. 15. 기준금리 공포일 기준)

- 공금예금 금리: 1.56%

- 정기예금 금리: 6개월 이상 2.43%, 1년 이상 2.51%

□ 2022년 어르신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

- 사업예산: 65,000천원
- 교부결정액: 64,900천원(15개 수행기관, 14개 보조사업)

(단위: 천원)

연번	단체(시설)명	사업명	교부결정액
합 계			64,900
1	(사)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채은영)	어르신사랑방 지도자 전통문화체험 및 심신힐링	7,760
2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강형태)	MAMA (마술로 마을만들기-남성 어르신 마술공연단)	3,200
3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송인석)	살'맛'나는 사할린세대 지원사업 (사할린 어르신 세대 한글문해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	3,600
4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이철우)	새출발 (어르신 스스로의 가치 인식 변화에 따른 주체적인 삶 지원사업)	2,950
5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소인영)	내 마음 정원 가꾸기 (어르신 치매, 우울, 자살 예방활동 프로그램)	4,650
6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이재영)	삶의 활력소 (기공체조, 밴드체조를 통한 일상 생활의 활력 도모)	3,000
7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김지연)	좋은이웃 실버인형극단 (어르신 전문 인형극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프로그램)	2,400
8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김성미)	청바지 건강 클럽(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여가프로그램, 줌캠페인을 통한 건강유지 및 공유 공간 환경개선)	3,750
9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임부영)	스마트한 방역 소독 (시니어 고용절벽시대의 신중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3,200
10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서순애)	미술로 꽃피우는 "Blossom 청춘 life" (미술을 매개체로 일상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2,950
11	연지어르신복지센터 (범현)	정원아 나눔을 부탁해 (온·오프라인 정보화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	3,440
12	(사)나눔과기쁨 강서구지부 (김병수)	홀몸 어르신 밀반찬 배달 (홀몸 어르신 밀반찬 제공)	5,000
1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현상분)	사랑의 영양식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밀반찬 제공)	7,000
14	연지어르신복지센터 (벚꽃어린이공원)	노(老)리(禮)터(據) 열린 프로그램 (어르신 야외 여가활동 공간 노리터에서 진행하는 여가프로그램)	2,000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근린공원)		2,000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서낭당근린공원)		2,000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봉제산근린공원)		2,000
	강서구체육회 (구암근린공원)		2,000
	치매안심센터 (원당근린공원)		2,000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